

현행 (법률 제18584호)	개정 (법률 제18918호)
<p><b>제59조(환경보전협회)</b>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, 기술개발 및 교육·홍보, 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<b>환경보전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</b>를 설립한다.</p>	<p><b>제59조(한국환경보전원)</b>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, 기술개발 및 교육·홍보, 생태복원 등을 <b>효율적으로</b>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<b>한국환경보전원(이하 "보전원"이라 한다)</b>를 설립한다.</p>
<p>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</p>	<p>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.</p>
<p>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</p>	<p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</p>
<p>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·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④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·보조금,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·수수료,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, 차입금,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. 이 경우 출연금·보조금의 지급·관리·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<p>⑤ 협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1항의 사업 및 환경부장관이 승인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.</p>	<p>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,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그 밖의 자(이하 이 항에서 "국가등"이라 한다)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·지원사업</li> <li>2.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·활용, 수변생태계 복원, 수질·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</li> <li>3.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</li> <li>4.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·조사·검사·평가·연구사업</li> <li>5.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·개선·지원사업</li> <li>6.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·협력·지원사업</li> <li>7.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</li> <li>8.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</li> </ol>
<p>⑥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.</p>	<p>⑥ 환경부장관은 보전원의 운영·사업 등을 지도·감독하고, 보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·예산 및 사업실적·결산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⑦ 보전원의 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서 보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⑧ 보전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⑨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⑩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